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60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종교단체 B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11. 28.
판 결 선 고	2018.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644,340원, 지방교육세 1,532,810원, 농어촌특별세 1,021,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4

가. 원고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4. 7. 7. [redacted]시 [redacted]구 C, D, E, F, G(이하 번지로만 특정한다)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토지 면적: 11,686㎡, 건물 면적: 76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대표자인 H로부터 증여받아 2014. 7. 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임을 이유로 2014. 7.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49,457,230원, 농어촌특별세 9,891,440원 합계 59,348,670원을 감면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8. 28. C 토지 중 3,351㎡(이하 '자연장지 허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에 자연장지 허가 토지와 G 토지(면적 1,726㎡, 이하 자연장지 허가 토지와 합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가 자연장지(수익사업)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7. 6. 9. 취득세 20,644,340원, 농어촌특별세 1,021,870원, 지방교육세 1,532,81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23,199,02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아 쟁점 토지를 수목장(이하 '이 사건 수목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목장은 불교의 근본사상인 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4

회사상, 극락왕생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49제와 같은 축원 제사 등을 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만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종교단체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쟁점 토지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자연장지 허가 토지는 원고가 적법하게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아 조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등 참조).

다. 쟁점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4

정 및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장이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이나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이 원래 영리를 추구하는데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영리법인과 유사하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취득세 면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에도 반하므로 취득세를 추징 · 부과함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수목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 토지의 면적이 5,077㎡로 비교적 큰 규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목장의 사용대금이 아래 표와 같이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수목장이 불교 신도들에 한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목 아래 유골함 안치를 허용하고 있는 점, 원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수목장을 광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목장은 규모와 사용대금, 운영체계 등의 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4

자연장지(수목장)사용대금				
구분		금액	관리비 1년차	비고
사용료	수목장(공동장지)	2백만원	5만원	기당가격
	개인목	3백만원	5만원	주당가격
	부부목(2위)	5백만원	10만원	
	소가족형(4위)	7백만원		
	중가족형(6위)	9백만원		
	중가족형(8위)	1천2백만원		
	대가족형(10위)	2천만원	15만원	
	중중/대가족형(15위)	3천만원		

③ 원고는 위 표 기재 사용대금이 자연장지의 분양대금이 아니라 축원 제사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실비용으로서 종교 기부금으로 받고 있고, 수목장 조성 비용에 비하면 그 비용이 실비변상 수준에 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의 영리성 여부는 실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분양가격표'라는 제목 하에 수목장 가격을 안내하고 있었으며, 그 비용이 인근에 위치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타 수목장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거나 이 사건 수목장의 사용대금이 채산성을 고려함 없이 책정되었고 실비 변상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원고는 제사 또는 극락왕생 합동 발원기도 비용으로 매년 1억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수목장의 운영을 통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 제사 또는 기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사 또는 기도 행사와 관련하여 신도들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을 제9호증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사 또는 기도행사 관련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목장 운영과 관련한 수입,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4

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목장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수목장이 원고의 경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수목장 운영이 불교 신자들의 극락왕생 기원 등의 종교행위의 일환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장의 규모, 시설, 사용대금,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목장 운영이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성과 반복성도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수목장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제사 또는 극락왕생 기원 등의 종교행위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한편 원고는 자연장지 허가 토지는 적법하게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아 조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연장지 허가 토지를 포함한 쟁점 토지 전체에서 수익사업으로 이 사건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자연장지 조성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4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신혜원

판사 이창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